

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676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10. 06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10. 12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3. 10. 19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수정가결

2. 개정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(2023. 7. 18.)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도입 및 경조사 휴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 재직휴가 확대 및 이월 등 직원 복지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공무원 휴가 제도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을 ‘2년 미만’에서 ‘5년 미만’으로,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‘2일’에서 ‘3일’로 각각 확대(안 제18조의2)

나.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8조의3)

다. 장기재직휴가 확대 부여 및 이월(안 제23조제6호)

구 분	개정전(일)	개정후(일)	비 고
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	-	5	신설
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	10	15	확대
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	20	20	-
재직기간 30년 이상	20	25	확대

-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장기재직휴가 이월

라. 포상휴가 확대(5일→7일, 안 제23조제8호)

마.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그 공무원에 15일의
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 신설(별표 3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356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8. 25. ~ 9. 14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5. 본문: 붙임과 같음

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○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해
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재직기간 2년 미만을 5년 미만
으로 규정하고, 가산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연장함(안 제18조의2)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 개정(2023.7.18.), 시행(2023.10.19.)에 따른 조치로 동 조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을 별표4로 규정,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를 확대하여 사기 진작을 도모함.
-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8조의3)
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제4항 개정 시행(2023.6.13.)에 따른 반영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범위에서 수당 대신 근무시간을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 유연성을 확대하였음.
- 장기재직휴가 확대 및 이월(안 제23조제6호)
 - 5년이상 10년미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, 30년 이상에 대해 각각 5일의 휴가일수를 추가 확대하고, 미사용 휴가를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.
 - 경남도내 시군별 장기재직휴가 일수 현황(붙임 참조)
- 포상휴가 확대(안 제23조제8호)
 - 포상휴가를 5일에서 7일로 확대하여 재난·재해 발생 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 수행하는 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 도모
-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의 경조사 휴가 부여 규정 신설(별표3)
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제2항 개정 시행(2023.7.18.)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할 경우 충분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음.
-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 유연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.

7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8. 토 론 : 없음.

9. 심사결과 : 2023. 10. 19. 수정가결

붙 임: 1. 수정안 제안서

2. 「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수정안

3. 수정안 대비표

「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수정 제안서

의안번호	제2676호 관련
------	--------------

발의연월일	2023. 10. 19.
발 의 자	김향숙 의원

1. 수정이유

-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23조 6호의2 장기재직휴가 이월에 대해서는 고성군공무원노사협의회 합의 결과를 반영한 조례안 내용의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23조 6호의2 “제6호에 따른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직휴가 일수에 포함한다. 이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” 를 “제6호에 따른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.” 로 수정함.

「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23조 6호의2 “제6호에 따른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직휴가 일수에 포함한다. 이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” 를 “제6호에 따른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.” 로 수정함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조례안	수정안
제23조(특별휴가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3조(특별휴가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6의2. <u>제6호에 따른 해당 재직 기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월하여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 가 일수에 포함한다. 이월 방 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</u>	6의2. <u>제6호에 따른 해당 재직 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 월하여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 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.</u>
7. 8. (생략)	7. 8. (현행과 같음)